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공급계약-준공후-분양권(입주권)", "전매-준공후-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엑셀검색결과상 동일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됨.

2. 분양권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에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을 말함.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계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이전에 인터넷 बैं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청약 가상체험관",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및 고령자(65세 이상))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과 무관하게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및 은행창구 접수 불가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④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2016.08.1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가점제 40%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순위 청약 접수 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1순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에게 공급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제34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rte-xi.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아파트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 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19.12.11)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해당주택건설지역(안양시 만안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

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행위자)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가 실시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기간 (일반/특별공급 당첨자)	계약체결
일 정	2019.12.03.(화)	2019.12.04.(수)	2019.12.05.(목)	2019.12.11.(수)	2019.12.17.(화) ~ 12.21.(토)	2019.12.23.(월) ~ 12.26.(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내방 접수 (10:00 ~ 16:00)	(10:00 ~ 16: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www.ap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2you.com /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 당첨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건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20-4번지)

※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아르테자이 아파트 공급을 위한 주요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주택공급과 관련한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제반 법령이 우선합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 11265호(2019.11.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18-1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8층 12개동, 총 1,021세대[임대: 62세대, 조합: 408세대, 보류지: 6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5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47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47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03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1세대 포함]
- 입주 예정 시기 : 2022년 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1.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수)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19001004-01	039.8400A	39A	39.8400	15.1200	54.9600	31.4600	86.4200	23.7975	6	-	-	1	-	1	5	-
	2019001004-02	039.9400B	39B	39.9400	15.2500	55.1900	31.5300	86.7200	23.8971	17	1	1	3	-	5	12	-
	2019001004-03	049.8200A	49A	49.8200	19.3200	69.1400	39.3300	108.4700	29.9374	8	-	-	1	-	1	7	1
	2019001004-04	049.9000B	49B	49.9000	19.2700	69.1700	39.4100	108.5800	29.9504	19	1	1	3	-	5	14	-
	2019001004-05	049.9600C	49C	49.9600	17.5300	67.4900	37.0600	104.5500	21.2897	13	1	1	2	-	4	9	1
	2019001004-06	059.9700A	59A	59.9700	23.0500	83.0200	47.3600	130.3800	35.9474	99	9	9	19	2	39	60	8
	2019001004-07	059.9800B	59B	59.9800	23.2100	83.1900	47.3700	130.5600	36.0211	56	5	5	11	1	22	34	4
	2019001004-08	059.9000C	59C	59.9000	23.2400	83.1400	47.3000	130.4400	35.9994	4	-	-	-	-	-	4	1
	2019001004-09	059.9500D	59D	59.9500	21.7600	81.7100	44.4700	126.1800	25.7754	181	18	18	36	5	77	104	7
	2019001004-10	063.7400	63	63.7400	22.6100	86.3500	47.2800	133.6300	27.2391	121	12	12	24	3	51	70	6
	2019001004-11	076.0600A	76A	76.0600	28.2400	104.300	60.0800	164.3800	45.1616	7	-	-	1	-	1	6	1
	2019001004-12	076.7300B	76B	76.7300	28.8700	105.600	60.6100	166.2100	45.7245	7	-	-	1	-	1	6	-
	2019001004-13	076.6700C	76C	76.6700	29.0300	105.700	60.5500	166.2500	45.7678	7	-	-	1	-	1	6	1
합계										545	47	47	103	11	208	337	30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39.8400A	39.9400B	49.8200A	49.9000B	49.9600C	59.9700A	59.9800B	59.9000C	59.9500D	63.7400	76.0600A	76.7300B	76.6700C
약식 표기	39A	39B	49A	49B	49C	59A	59B	59C	59D	63	76A	76B	76C

구분	동별	해당 주택형	비고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39A/B, 49A/B, 59A/B/C, 76A/B/C	
주상복합아파트	201동, 202동, 203동, 204동	49C, 59D, 63	

- ※ 본 아파트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단지로 구성되며, 동일 사업장으로 인허가를 득하였으나, 아파트와 주상복합 부지가 도로를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어 관리사무소 운영 및 관리비 정산은 각각 별도로 진행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², 원)

주택 형	공급 세대수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지정 기간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 시	2020.01.21	2020.05.19	2020.10.20	2021.03.23	2021.10.19	2022.01.18	2022.04.19		
39A	6	108동 5,6호	11~15층	2	126,480,000	128,520,000	255,000,000	10,0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66,500,000
			16~17층	4	128,960,000	131,040,000	260,000,000	10,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39B	17	108동 3호	2층	1	116,064,000	117,936,000	234,000,000	10,0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60,200,000
			3층	1	118,544,000	120,456,000	239,000,000	10,0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61,700,000
			4층	1	121,024,000	122,976,000	244,000,000	10,000,000	24,400,000	24,400,000	24,400,000	24,400,000	24,400,000	24,400,000	24,400,000	24,400,000	63,200,000
			5층	1	123,504,000	125,496,000	249,000,000	10,0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64,700,000
			6~10층	5	125,984,000	128,016,000	254,000,000	10,0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66,200,000
			11~15층	5	128,464,000	130,536,000	259,000,000	10,0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67,700,000
			16~20층	1	130,944,000	133,056,000	264,000,000	10,0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69,200,000
49A	8	106동 1호	21~22층	2	133,424,000	135,576,000	269,000,000	10,000,000	26,900,000	26,900,000	26,900,000	26,900,000	26,900,000	26,900,000	26,900,000	26,900,000	70,700,000
			1층	1	151,776,000	154,224,000	306,000,000	10,0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81,800,000
			2층	1	154,752,000	157,248,000	312,000,000	10,0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83,600,000
			3층	1	157,728,000	160,272,000	318,000,000	10,0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85,400,000
			4층	1	160,704,000	163,296,000	324,000,000	10,0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87,200,000
			5층	1	163,680,000	166,320,000	330,000,000	10,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89,000,000
49B	19	108동 4호	6~10층	3	166,656,000	169,344,000	336,000,000	10,0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90,800,000
			2층	1	160,208,000	162,792,000	323,000,000	10,0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86,900,000
			3층	1	163,184,000	165,816,000	329,000,000	10,0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88,700,000
			4층	1	166,160,000	168,840,000	335,000,000	10,0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90,500,000
			5층	1	169,136,000	171,864,000	341,000,000	10,0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92,300,000
			6-10층	5	172,112,000	174,888,000	347,000,000	10,0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94,100,000
			11-15층	5	175,088,000	177,912,000	353,000,000	10,0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95,900,000
49C	13	201동 4호	16-20층	5	178,064,000	180,936,000	359,000,000	10,0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97,700,000
			2층	1	155,248,000	157,752,000	313,000,000	10,0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83,900,000
			3층	1	158,224,000	160,776,000	319,000,000	10,0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85,700,000
			4층	1	161,200,000	163,800,000	325,000,000	10,0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87,500,000
			5층	1	164,176,000	166,824,000	331,000,000	10,0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89,300,000
			6-10층	5	167,152,000	169,848,000	337,000,000	10,0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91,100,000
			11-14층	4	170,128,000	172,872,000	343,000,000	10,0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92,900,000	

주택 형	공급 세대수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 기간			
								계약 시	2020.01.21	2020.05.19	2020.10.20	2021.03.23	2021.10.19	2022.01.18	2022.04.19				
59A	99	101동 3,4호 105동 3,4,5호 107동 2,3호 108동 1호	1층	7	243,040,000	246,960,000	490,000,000	10,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37,000,000	
			2층	7	248,000,000	252,000,000	500,000,000	1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40,000,000
			3층	8	252,960,000	257,040,000	510,000,000	10,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43,000,000
			4층	8	257,920,000	262,080,000	520,000,000	10,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46,000,000
			5층	4	262,880,000	267,120,000	530,000,000	10,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49,000,000
			6-10층	16	267,840,000	272,160,000	540,000,000	10,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52,000,000
			11-15층	20	272,800,000	277,200,000	550,000,000	10,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55,000,000
			16-20층	15	277,760,000	282,240,000	560,000,000	10,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58,000,000
			21-25층	14	282,720,000	287,280,000	570,000,000	10,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61,000,000
59B	56	105동 2호 107동 1,4호 108동 2호	1층	4	231,136,000	234,864,000	466,000,000	10,0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129,800,000	
			2층	4	236,096,000	239,904,000	476,000,000	10,0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132,800,000	
			3층	4	241,056,000	244,944,000	486,000,000	10,0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35,800,000	
			4층	4	246,016,000	249,984,000	496,000,000	10,0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38,800,000	
			5층	2	250,976,000	255,024,000	506,000,000	10,0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141,800,000	
			6-10층	10	255,936,000	260,064,000	516,000,000	10,0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44,800,000	
			11-15층	10	260,896,000	265,104,000	526,000,000	10,0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47,800,000	
			16-20층	10	265,856,000	270,144,000	536,000,000	10,0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50,800,000	
			21-23층	8	270,816,000	275,184,000	546,000,000	10,0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53,800,000	
59C	4	105동 1호	3층	1	240,560,000	244,440,000	485,000,000	10,0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35,500,000	
			4층	1	245,520,000	249,480,000	495,000,000	10,0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38,500,000	
			20층	1	265,360,000	269,640,000	535,000,000	10,0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50,500,000	
			21층	1	270,320,000	274,680,000	545,000,000	10,0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53,500,000	
59D	181	201동 2,3호 202동 2,3호 203동 2,3호 204동 2,3호	2층	7	226,672,000	230,328,000	457,000,000	10,0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127,100,000	
			3층	8	231,632,000	235,368,000	467,000,000	10,0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130,100,000	
			4층	8	236,592,000	240,408,000	477,000,000	10,0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33,100,000	
			5층	8	241,552,000	245,448,000	487,000,000	10,0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36,100,000	
			6-10층	40	246,512,000	250,488,000	497,000,000	10,0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39,100,000	
			11-15층	38	251,472,000	255,528,000	507,000,000	10,0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142,100,000	
			16-20층	30	256,432,000	260,568,000	517,000,000	10,0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45,100,000	
			21-25층	30	261,392,000	265,608,000	527,000,000	10,0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48,100,000	
			26층이상	12	266,352,000	270,648,000	537,000,000	10,0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51,100,000
63	121	201동 1호 202동 1,4호 203동 1,4호 204동 1,4호	2층	6	256,432,000	260,568,000	517,000,000	10,0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45,100,000	
			3층	7	261,888,000	266,112,000	528,000,000	10,0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48,400,000	
			4층	7	267,344,000	271,656,000	539,000,000	10,0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51,700,000	
			5층	5	272,800,000	277,200,000	550,000,000	10,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55,000,000	
			6-10층	25	278,256,000	282,744,000	561,000,000	10,0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158,300,000	
			11-15층	24	283,712,000	288,288,000	572,000,000	10,0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161,600,000	
			16-20층	20	289,168,000	293,832,000	583,000,000	10,0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164,900,000	
			21-25층	20	294,624,000	299,376,000	594,000,000	10,0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168,200,000	
			26층이상	7	300,080,000	304,920,000	605,000,000	10,0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71,500,000	

주택 형	공급 세대수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 기간			
								계약 시	2020.01.21	2020.05.19	2020.10.20	2021.03.23	2021.10.19	2022.01.18	2022.04.19				
76A	7	106동 3호	1층	1	296,112,000	300,888,000	597,000,000	10,0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169,100,000	
			2층	1	302,064,000	306,936,000	609,000,000	10,0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72,700,000
			3층	1	308,016,000	312,984,000	621,000,000	10,0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76,300,000
			4층	1	313,968,000	319,032,000	633,000,000	10,0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179,900,000
			16-20층	3	337,776,000	343,224,000	681,000,000	10,0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194,300,000
76B	7	106동 4호	2층	1	287,680,000	292,320,000	580,000,000	10,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64,000,000
			3층	1	293,632,000	298,368,000	592,000,000	10,0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167,600,000
			4층	1	299,584,000	304,416,000	604,000,000	10,0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171,200,000
			16-20층	3	323,392,000	328,608,000	652,000,000	10,0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185,600,000
			21층	1	329,344,000	334,656,000	664,000,000	10,0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189,200,000
76C	7	106동 2호	1층	1	281,728,000	286,272,000	568,000,000	10,0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160,400,000
			2층	1	287,680,000	292,320,000	580,000,000	10,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64,000,000
			3층	1	293,632,000	298,368,000	592,000,000	10,0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167,600,000
			4층	1	299,584,000	304,416,000	604,000,000	10,0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171,200,000
			16-20층	3	323,392,000	328,608,000	652,000,000	10,0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185,600,000

3.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취급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m²/세대)

구 분		39A	39B	49A	49B	49C	59A	59B	59C	59D	63	76A	76B	76C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	1	-	-	1	2	1	-	2	2	-	-	-	9
		서울특별시	-	-	-	-	-	2	1	-	2	2	-	-	-	7
		인천광역시	-	-	-	1	-	1	1	-	2	2	-	-	-	7
	국가유공자 등		-	-	-	-	-	1	1	-	3	1	-	-	-	6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	1	1	-	3	1	-	-	-	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	1	-	-	3	2	-	-	-	6
	중소기업 근로자		-	-	-	-	-	1	-	-	3	2	-	-	-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	1	-	1	5	3	-	9	6	-	-	-	26	
	서울·인천 거주자(50%)		-	-	-	-	-	4	2	-	9	6	-	-	-	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1	3	1	3	2	15	9	-	27	18	1	1	1	82
		일반공급(25%)	-	-	-	-	-	4	2	-	9	6	-	-	-	21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	-	-	-	-	2	1	-	5	3	-	-	-	11
합 계			1	5	1	5	4	39	22	-	77	51	1	1	1	20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2호(독립유공자), 제2호의2(국가유공자), 제3호(보훈대상자), 제4호(5·18유공자), 제5호(특수임무유공자), 제6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예비입주자 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점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 선정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40% 이상 선정 ※ 단,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4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 선정 ※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함.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및 도시재생부지 제공사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table border="1" data-bbox="235 1204 2116 1428"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caption>[청약예금의 예치금액]</caption> <thead> <tr> <th>구 분</th> <th>안양시 및 경기도</th> <th>서울특별시</th> <th>인천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구 분	안양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 분	안양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4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 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위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8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7세대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부지 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p>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7세대**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나 입양아를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 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 2018.05.08. 일부개정]에 의거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건설지역(안양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안양시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성년 자녀수(태아나 입양아 포함)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접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영유아 2명	10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103세대**

신청자격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7년 이내(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 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하나, 2018.12.11. 전 기존 소유 주택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실제 출산한 날(자녀의 주민등록상 일자)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 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 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며,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②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자녀가 없거나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 120%이하	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8,646,944원 ~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 130%이하	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58원	9,597,501원 ~ 10,397,292원	10,376,333원 ~ 11,241,026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 ~ 13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성년(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 대상은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전원의 수를 의미합니다.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11세대**

<p>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하여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p>당첨자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 가점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p>신청자격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안양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p>청약신청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순위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됨)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전용면적 85㎡이하 평형,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합니다.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6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제가 적용되는 주택수 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1.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자(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에 속한 자)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 : 무주택자(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에 속한 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을 서약한 자에 한함)
 3. 제1호와 제 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제1순위(기존주택 미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 ※ 민영주택 추첨제 제 2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기존 소유 주택에 대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소유권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여야 하며, 우선 공급 받은 후 서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습니다. 이 경우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 사실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처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공급 받은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1항 2호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므로,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 청약 가능합니다.
- 부적격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부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 (전용면적 85㎡초과)변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로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4) 청약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이후 변동 시 당첨자는 당사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최하층 주택우선배정 신청(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1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 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인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점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 중 (최하층)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입양을 포함)를 둔 분 ※ 경쟁 시 ①, 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인증서류 및 최하층(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별도 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청약 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자격인증서류 및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별도 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합니다.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공급방법	신청자격
민영주택	수도권 거주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1순위	85㎡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12개월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2순위	전 주택형	추첨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안양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9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부터 혼인 가능함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주택("분양권등" 및 "소형·저가주택등"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함.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1년 이상 ~ 2년 미만	3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2년 이상 ~ 3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3년 이상 ~ 4년 미만	5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4년 이상 ~ 5년 미만	6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5년 이상 ~ 6년 미만	7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6년 이상 ~ 7년 미만	8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7년 이상 ~ 8년 미만	9	15년 이상	17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제외)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53조 제 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외 세대원이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소유 시 부양가족수 미포함하여 산정합니다.(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3조, [별표1]의1

구 분	신 청 자 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세대원</p> <p>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p> </div> <p>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이하 “소형·저가주택등”이라 한다)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해당 주택형의 청약경쟁이 있었으나 계약이 되지 아니한 미계약 물량은 제외)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p>1)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청약자 본인은 제외하여 산정) 가) 청약자의 배우자 나)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무주택 직계존속 다)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 손자녀 포함)를 아래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p> <p>2) 배우자 -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 여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포함)</p> <p>3) 무주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주(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배우자도 세대주여야 함)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나) 단, 직계존속 등 1인이 주택, “분양권등” 및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 “분양권등” : 2018.12.11. 이후 공급계약(단, 2018.12.11. 이후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사업계획승인 신청된 주택에 한함) 또는 매매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 다)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됨.</p> <p>4)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 손자녀를 포함)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나) 단, 만 30세 이상인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다)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됨.</p>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p>

④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및 ②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나,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3조]
 - ①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②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등" 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③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④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⑤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봄)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건물[중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⑨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IV

청약신청 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 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बैं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 대상자	신청 일자	신청 방법	신청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2019.12.03(화) (APT2you : 08: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APT2you)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신청자 본인만 건본주택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은행창구 접수 불가) • 당사 건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4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19.12.04(수) 08: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2순위	2019.12.05(목) 08:00~17:30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및 고령자)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건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니,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및 고령자)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에·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주민등록표등본 1부 ·신분증
일반 공급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 사항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p>[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 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일반공급 PC 청약 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통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 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주택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구 분	선 정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포함)는 당첨자발표 시 아파트투유(www.aprt2you.com)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table border="1" data-bbox="360 619 2116 667"> <tr> <th data-bbox="360 619 2116 667">[추첨제 우선공급]</th>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 거주 신청자가 수도권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된 예비입주자 수가 예비입주자 총수에 미달되거나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첨제 우선공급]
[추첨제 우선공급]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건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건본주택)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구 분	선 정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중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V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9.12.11(수) • 장소 : 당사 홈페이지(www.arte-xi.co.kr)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애인 및 고령자인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

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미 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일 주택형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를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arte-xi.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손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12.11(수) ~ 12.20(금) (10일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19.12.11(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 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역,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일반공급)	2019.12.17(화) ~ 12.21(토) / 5일간 10:00 ~ 16:00	아르테자이 견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20-4번지)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일정,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 안내

- 장애인 및 고령자(65세 이상)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 포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증	본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발급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 생략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부지 제공자 제외.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 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무주택 서약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8년 01월 01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1] 참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	• 혼일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당사 건본주택 비치)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한 무직자는 신고사실없음을 확인(전년도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공급신청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공급신청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 철거명실확인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 처분 약약서	-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②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2018.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제출(전년도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장소 비치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9.12.23(월) ~12.26(목) / 10:00 ~ 16:00	아르테자이 견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20-4번지)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비 서류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계약금 입금증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자격확인서류		○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증명서	○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자격확인서류 제출자는 제외(인감도장과 일치할 경우)
	인감도장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신분증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제3자 대리계약 시 (본인 이외)	※ 상기 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위임장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 인감증명서		○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인장		○	• 또는 대리인 서명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사업주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장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단, 향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21.예정) 및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최초 분양계약자가 기존주택 처분서약 미이행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안내

구분	동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5동, 106동, 107동, 108동	NH농협은행	301-0472-0969-21	예술공원입구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지에스건설(주)
	101동, 201동, 202동, 203동, 204동	우리은행	1005-003-834259	

- 상기 계좌는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공급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1차 계약금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2차 계약금부터는 계약 체결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 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당사(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봅니다.
-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이자후불제)에 의거 계약금 완납(10%)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2차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VII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

1. 발코니 확장비

(단위 : m²,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39A	39B	49A	49B	49C	59A	59B	59C	59D	63	76A	76B	76C
발코니 확장비	-	2,420,000	3,190,000	3,630,000	6,270,000	6,490,000	6,380,000	6,380,000	3,740,000	6,490,000	7,590,000	7,480,000	7,370,000
계약금(10%) 계약 시	-	242,000	319,000	363,000	627,000	649,000	638,000	638,000	374,000	649,000	759,000	748,000	737,000

※ 상기 주택형 중 39A타입은 설계 특성상 발코니 확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05.12.02. 개정 시행)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건본주택을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 비용은 분양가와는 별도로 부담) 확장 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공개된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건축법 시행령」및「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

•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판매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1. 마감재 선택(바닥 폴리싱타일) ※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 가능

(단위 : m²,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39A	39B	49A	49B	49C	59A	59B	59C	59D	63	76A	76B	76C	
바닥 폴리싱타일	430,000	360,000	460,000	380,000	500,000	500,000	520,000	520,000	520,000	530,000	660,000	590,000	630,000	
계약금(10%)	계약 시	43,000	36,000	46,000	38,000	50,000	50,000	52,000	52,000	52,000	53,000	66,000	59,000	63,000

※ 폴리싱타일 바닥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폴리싱타일 바닥 시공은 거실+주방+복도이며, 미선택 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은 용도에 맞게 선택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납부일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발코니 확장, 바닥 폴리싱타일	계약 시	2020.05.19	입주지정기간	KB국민은행	006037-04-005269	지에스건설(주)

- 상גיע좌는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납부계좌]로서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 옵션 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 가능

1. 시스템 에어컨(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m²,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제조사	비고
39A/B	선택1	2대	거실+침실1	3,220,000	LG전자	
49A/B/C	선택1	2대	거실+침실1	3,330,000		
	선택2	3대	거실+침실1+침실2	4,690,000		
59A/B/C/D 63	선택1	2대	거실+침실1	3,330,000		
	선택2	3대	거실+침실1+침실2	4,690,000		
	선택3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000,000		
76A/B/C	선택1	2대	거실+침실1	3,610,000		
	선택2	3대	거실+침실1+침실2	4,910,000		
	선택3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050,000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본 설치 품목인 에어컨냉매 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미설치 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관련시설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2.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공급업체	비고
시스클라인	선택1-1	1대	거실, 주방 중 1대	710,000	자이에스앤디(주)	
	선택1-2		침실 중 1대	842,000		
	선택2-1	2대	거실, 주방	1,420,000		
	선택2-2		거실 (또는 주방) 1대, 침실 중 1대	1,552,000		
	선택2-3		침실 중 2대	1,684,000		
	선택3-1	3대	거실 1대, 주방 1대, 침실 중 1대	2,262,000		
	선택3-2		거실 (또는 주방) 1대, 침실 중 2대	2,394,000		
	선택3-3		침실 중 3대	2,526,000		
	선택4-1	4대	거실 1대, 주방 1대, 침실 중 2대	3,104,000		
	선택4-2		거실 (또는 주방) 1대, 침실 중 3대	3,236,000		
	선택5-1	5대	거실 1대, 주방 1대, 침실 중 3대	3,946,000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 시공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제공되는 거실 컨트롤러가 거실과 시스클라인(천장형 공기청정기)까지 제어 가능하여 거실과 주방 선택 시 컨트롤러 가격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침실 선택 시 매립형 컨트롤러(난방 제어기능 포함, 난방 컨트롤러 대체)를 침실별 각1대씩 제공합니다.

3. 주방가전 옵션

(단위 : m²,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제조사	품목	모델명	가격	비고
59A/B/C/D, 63, 76A/B/C	LG전자	빌트인 냉장고	S711SI24B	5,750,000	
			S691SI34BS2	7,65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K221PR14B	1,450,000		
전 주택형		빌트인 광파오븐렌지	MZ385EBTD	540,000	하부 드로워 포함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가전 옵션 선택 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시스템 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기 시스템, 주방 가전 등	납부계좌, 납부일정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VIII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2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시설 : 아파트(101동~108동)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샤워·락카실, 입주민 회의실) 등**
주상복합아파트(201동~204동)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 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 사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
	조명설치 설치(다목)	적용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2조 제9호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거실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녹색건축예비 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101동~108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1. [별첨] 해당하는 곳에 도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요요
건축물명 : 예송공영임대주택지구주거복지개발사업(신도시)	인증번호 : 19-주-예-1-0230
공공연도 : 2021년 12월 31일	평가자 : 이주영
주 소 : 경기 안성시 안성구 안성동 18-1번지 일원	인증기관 : 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
층 수 : 지하3층 / 지상28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 면 적 : 93437.03(㎡)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무양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비율상
에너지소비량 인증등급	87.8	1	46	33.2
CO ₂ 배출 인증등급		1	64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1세대에너지소비량 (kWh/세대·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5.2	86.3	67.1	18.8
급탕	30.7	35.5	26.4	7.2
조명	11.9	11.9	32.8	5.6
합계	87.8	138.8	145.5	33.2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에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세대에너지소비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도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소비량에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공조, 냉방, 급탕, 조명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소비량에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공조, 냉방, 급탕, 조명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되어() 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세대에너지소비량 항목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장 2019년 03월 12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201동~204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1. [별첨] 해당하는 곳에 도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요요
건축물명 : 예송공영임대주택지구주거복지개발사업(신도시)	인증번호 : 19-주-예-1-0234
공공연도 : 2021년 12월 31일	평가자 : 이주영
주 소 : 경기 안성시 안성구 안성동 18-1번지 일원	인증기관 : 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
층 수 : 지하3층 / 지상28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 면 적 : 46462.23(㎡)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무양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kg/㎡·년)	비율상
에너지소비량 인증등급	96.2	1	46	33.3
CO ₂ 배출 인증등급		1	64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1세대에너지소비량 (kWh/세대·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51.8	95.1	73.9	19.8
급탕	30.7	35.5	26.4	7.2
조명	12.7	12.7	34.8	5.9
합계	96.2	148.4	149.3	35.3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에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세대에너지소비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도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소비량에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공조, 냉방, 급탕, 조명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소비량에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공조, 냉방, 급탕, 조명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되어() 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세대에너지소비량 항목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장 2019년 03월 12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예송공영임대주택지구주거복지개발사업	인증번호 : KR-19-1746
건축주 : 예송공영임대주택지구주거복지개발사업(주) (주)예송공영임대주택지구주거복지개발사업(주)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인증(예정)일 : 2022년 12월	유효기간 : 2019. 8. 28. ~
주 소 : 경기 안성시 안성구 안성동 18-1번지 일원	사용승인(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층 수 : 지하 3층, 지상 28층	
연 면 적 : 145,381.830㎡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무양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05호, 환경부 고시 제2014-213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중합등급 ★☆☆☆

2019년 8월 28일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예송공영임대주택지구주거복지개발사업
 2. 신청자 : 예송공영임대주택지구주거복지개발사업(주) 조합
 3. 대 지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안성구 안성동 18-1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

1) 소용량관동급			3) 확장관동급		
성능항목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층벽 차단능률	★★★★	★★★★	경량층벽 차단능률	★★★★	★★★★
중용층벽 차단능률	★★	★★	수직통기성	★★★★	★★★★
외벽 열손실률	★★★	★★★	에너지절약률	★★★★	★★★★
외벽 단열계수	★★★	★★★	에너지절약률	★★★★	★★★★
외벽 단열계수	★★★	★★★	에너지절약률	★★★★	★★★★
외벽 단열계수	★★★	★★★	에너지절약률	★★★★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구분	등급
내진중요도 I	VII : 0.197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Ⅷ)으로 표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12019-101-0006200호	199,546,0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본조에서 "보증회사"라 칭함)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p>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p>	<p>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공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p> <p>【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p>
<p>보증약관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p>	<p>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 등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용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공급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 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공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 홀오토, 발코니세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p>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p>【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 이전에 그 주택공급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p>
<p>보증약관 제4조 (보증사고)</p>	<p>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공급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p>【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 보존종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p>

	<p>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p> <p>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p>
분양대금채권의 양도 등 관련	<p>• 표준사업약정서 제29조(분양대금채권의 양도 등) 관련</p> <p>① "안양예술공원입구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정비사업자금대출 관련 표준사업약정 체결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안양예술공원입구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급대금채권(조합원 및 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안양예술공원입구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조합원분양계약자 및 일반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대금채권 양도를 이의없이 승낙한다.</p>

-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 공사 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상 호	(주)해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주)한림이앤씨 건축사무소	(주)한성기술단	유원이앤씨에프(주)
금 액	2,654,536,000	610,676,000	330,000,000	50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상 호	예술공원입구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지에스건설(주)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28(안양2동, 2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
등록번호	123-82-13949	104-81-18121

IX 유의사항

■ 유의 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공통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공급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 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9)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 2 및 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본 아파트는 아파트 101동~108동, 주상복합아파트 201동~204동으로 구성되며, 동일 사업장으로 인·허가를 득하였으나, 아파트와 주상복합 부지가 도로를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어 관리사무소 운영 및 관리비 정산은 각각 별도로 진행됩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2014년 12월 16일로 소방내진설계가 미적용됩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거동 숫자 및 단지명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남측에는 경수대로, 예술공원고가차도가 인접하여 소음,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서측에는 노후주택, 상가 및 숙박시설이 밀집하여 미관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측에는 안양박물관, 김중업 건축박물관, 삼성천,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거리, 안양위터랜드,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숙박시설, 안양호암초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고, 이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에는 휴양시설(안양예술공원, 삼성천, 안양위터랜드 등)이 인접하여 공원 이용자들이 집중될 경우 소음 및 차량 단지 진출입 시 불편 등 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는 비봉산, 관악성당, 삼성산안후사, 칠보사, 지장사 등이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 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은 산(자연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묘 및 사찰 등이 존재하오니 현장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근에는 분묘, 영각당(납골당)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하여 분묘 조망,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108동 주변에는 종교시설(관악성당)이 위치하여 사생활,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동, 106동, 107동, 108동, 204동 인근에는 한전 전신주, 전선 및 통신선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입주 전 사업주체가 전신주 등 지중화 작업을 할 예정이며 이는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나,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되거나 개통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본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본 단지는 근린공원이 인접하여 공원 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의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설치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범위가 아닙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외부의 주변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또는 설치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소음실측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웬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옹벽 지지를 위해 시공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영구 점용료 발생 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하수시설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비봉산에서 기존에 유입되던 우수(구거) 관로를 우회 시공함에 따라 관로 선형이 단지의 소공원(기부채납)부지를 통과하여 9m 도시계획도로를 지나 삼성천으로 매설됩니다. • 경수대로 부분의 기존 버스 승강장(기존 한마음병원 앞)이 9m 도시계획도로와 간섭되어 비산동 방향으로 약 35m 이동 설치됩니다.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내에는「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의2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조합)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계 기관과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초등학교는 안양호암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는 별도의 학교신설 없이 만안중학군 내 중학교에 학생들을 추첨 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방법은 안양권(안양, 과천, 의왕, 군포) 학군 배정방법 등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방법을 따릅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관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동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5동, 106동, 107동, 108동의 동측으로 옹벽이 설치되어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북측에는 공원이 위치하여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동 서측면, 201동 남측면 및 202동 북측면 하부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8동은 임대세대와 분양세대가 함께 배치되어, 부속된 시설(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은 임대세대와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과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커뮤니티의 외관 디자인(입면, 벽체 마감 등) 및 외부 색채(형태, 패턴, 재질 등), 간판 위치, 조경, BI위치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재질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로 마감되나, 주동형태에 따라 일부 페인트 혼합으로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석재와 페인트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일부 동 측벽에는 금속마감 및 조명이 설치됩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라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약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계획상 인접세대 간섭으로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사생활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약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옹벽 등 단차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동(103동, 104동, 105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방공호 및 대공포진지 군사시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에 설치되는 문주의 형태, 크기, 위치 및 개수는 대지 여건 및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문주 설치에 따라 인접세대에 시야 및 빛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의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건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실외기실 측벽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 축소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단지 경계부(37번지) 부분은 준공 후 지표면 고저차로 인한 옹벽(콘크리트 또는 보강토)이 설치될 수 있으며 물고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출입구는 9m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어 기부채납 됨에 따라 문주 설치가 불가합니다. 설치 시에는 설치부지의 안양시에 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것은 당사와 무관합니다. •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위치 - 주민공동시설 : 자이안센터(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사우나, 입주민 회의실)는 103동 및 104동 데크하부 지하층에 위치 도서관 및 독서실은 202동 판매시설 1층에 위치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은 106동 데크하부 지하층, 204동 주상복합 판매시설 1층에 위치

		<p>어린이집은 201동 주상복합 판매시설 1층, 경로당은 105동 데크하부 지하층에 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시설: 주상복합 1층에 위치 - 근린생활시설 : 105동 데크하부 지하층에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와 주상복합 부지는 동일사업부지내에 위치하며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사용을 전제로 설치 되나, 그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주민공동시설 : 자이안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및 도서실 포함)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세부계획(평면 및 디자인, 마감재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입주민회의실 및 연회장에서 입주 전후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일정기간 운영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세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샤워실에 따른 급탕용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음 열기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공용설비 및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최하층)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빗물 재활용을 위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되어 있고,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및 필로티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환풍,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p>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101동~108동 지하 830대, 주상복합 201동~204동 지하 442대, 근린생활시설(105동 지하) 2대, 판매시설(주상복합) 69대 총 1,343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 주상복합과 판매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 판매시설의 주차공간은 주상복합 지하1층 주차장의 일부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행 유효높이는 2.3m적용되어서 택배차, 대형차량, 사다리차 등의 진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단, 일부 소형 택배차의 진입을 위하여 진입 및 해당층의 일부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반영하였습니다. •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p>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3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구획별, 동별로 지하주차장 층수가 상이합니다. • 106동, 107동, 108동은 지하1층, 2층, 3층 (3개층) 주차장과 연결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으며, 그 외 동들은 지하2층, 3층(2개층)만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동하부 PIT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완속 5개소, 급속 2개소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판매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일부 세대 부근 및 외부 조경공간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소음피해·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투입구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에 냄새 및 조망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시설 주차구획은 주상복합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주상복합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 판매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판매시설은 후분양에 따른 MD계획이 미확정이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판매시설 지붕에 판매시설용 실외기가 배치되어 인접세대는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주상복합아파트 지하1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판매시설용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판매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주상복합단지 차량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일부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후분양에 따른 MD계획이 미확정이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는 근린생활시설 벽면에 설치되어 보행시 소음 및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일부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단위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1층 세대는 2,400mm)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세부계획(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의 색상, 패턴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 침실사이즈는 안목치수 기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59㎡D타입 발코니1은 옆세대와 직각으로 마주하고 있어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9㎡D타입 발코니 외부 창호 중 보일러쪽 창쪽은 고정되어 열리지 않으며 반투명 유리가 적용됩니다.(발코니 외부 창호 중 실외기실쪽 창쪽만 열림) • 63㎡타입 침실1(안방) 드레스룸 창문크기는 770mm(W)x600mm(H)입니다. • 39㎡타입 108동 2103호, 2203호는 거실 측벽에 오픈발코니가 적용됩니다.
단위세대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흡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새시의 사양으로 인해 침실창 외부 골조 상단에 물 끊기 홈이 미설치 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새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 (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 세대인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 천장에 환기시스템(장비)설치 및 유상흡선품목인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되어 미관 저해 및 천장고가 낮아지며,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도어 설치 시 발코니 분합창의 높이는 낮아지고 크기(면적)는 줄어들며, 발코니 분합창 하단 바닥이 높아집니다.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건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과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입별로 보일러 설치 위치, 창호 높이 및 천장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 난간대는 조망을 위해 강화유리 난간대로 시공되며(일부 제외)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삿짐 이동이 불가합니다.
가구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 끼임 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거실 아트월은 동간 사생활보호를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화장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 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전기기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 보일러는 적절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조절기 등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 하부에 각종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 환기시스템으로 인한 실외기실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 외부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되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됩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른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됩니다. •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이 원패스 카드는 세대당 2매가 제공되며, 카드 디자인은 입주 시 확정됩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욕실, 주방 직배기 방식 대신 건식AD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경량칸막이를 통해 인접세대로 대피,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경량칸막이를 통한 인접세대로 대피 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하여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니, 계약 시 필히 확인하시고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p>건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유상옵션 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마감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동선의 개선 및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본 공사 시에도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또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며 세대 시공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으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준공도서에 따릅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 미건립 타입에 대해서 계약을 하실 경우 카탈로그 또는 이미지는 실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이전 건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 건본주택 미건립 타입 39Am², 39Bm², 49Am², 49Bm², 49Cm², 59Bm², 59Cm²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59m²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 미건립 타입 76Am², 76Bm², 76Cm², 84Am², 84Bm²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63m²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 : <http://www.arte-xi.co.kr>

■ 건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20-4번지 (1833-4125)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건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건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년 11월 28일(목)
건본주택 오픈	2019년 11월 29일(금)
특별공급 청약일	2019년 12월 03일(화)
1순위 청약일	2019년 12월 04일(수)
2순위 청약일	2019년 12월 05일(목)
당첨자발표	2019년 12월 11일(수)
자격확인 서류 접수	2019년 12월 17일(화) ~ 12월 21일(토)
정당계약	2019년 12월 23일(월) ~ 12월 26일(목)

총 1,021세대	분양문의 1833-4125 (건본주택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20-4)
------------------	---

